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1월 8일, 이양수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2. 13.) 상정, 제안설
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 4. 29.) 상정, 제안
설명,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0.) 상정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24.) 상정, 축조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4.) 상정,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4. 23.) 상정, 소위심

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양수 의원)

최근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미흡에 따른 난개발과 농촌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앞서 농촌정책 플랫폼으로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계획 수립가능지역 확대 및 수립절차 간소화 등 농촌공간계획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를 읍·면 보유 시·군 뿐만 아니라 그 외 농촌지역까지 확대해 특정지자체가 원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등 모든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가능토록 하여 지자체의 계획 관련 별도 인·허가절차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 ☐ 개정안은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대상 지역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다만, 안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38개)와 그러한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광주, 대전)는 기본계획 등의 심의를 담당하는 “기초정책심의회” 및 “광역정책심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할 실익이 없음.
- ☐ 따라서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기초정책심의회” 및 “광역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